##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 박완수·조경태·윤한홍

김기현 · 강기윤 · 배현진

이달곤・추경호・최형두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 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 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올해로 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창원시는 그동안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수행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포용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통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특히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창원시 산업 근간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본문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	재정지원)
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	
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10년간</u>	<u>20년간</u>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	
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